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성재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검찰이 공판 역량을 강화하고, 공판부서를 효율적·체계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유사 규모 청의 공판 검사 인원 및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공판제1부와 공판제2부를 통합하고 수원지방검찰청 공판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, 대구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(부장검사 1명)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정원(부장검사 1명)으로 이체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2. 10. ~ 12. 16.)

대통령령 제 호

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수원지방검찰청 계 “110”을 “111”로, 수원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,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, 고등검찰청 검사 “11”을 “12”로 하고, 대구지방검찰청 계 “80”을 “79”로, 대구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,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, 고등검찰청 검사 “10”을 “9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무부 검찰과	
연 락 처	(02) 2110 - 4210